

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12.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-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재단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도 출연금,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(안 제2조 제1항)
- 도지사가 지원한 출연금 등은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음 (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)
-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용 및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(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)
-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(안 제5조)

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재단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출연금
2.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

②도지사는 재단운영의 결손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출연금 등의 용도)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재단의 정관,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
2.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평가 등)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,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도지사와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행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,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2중 “재단법인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”을 “충북신용보증재단”으로 한다.